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에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균형발전제도과, 안전예방정책실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안전예방정책실에 재난안전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난안전데이터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 지구촌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공무원 역량 교육·평가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역량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5조 관련)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	0명	2026년 9월 30일까지
나.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	0명	2026년 9월 30일까지